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. 3. 28 선고 2017가단3034 판결 [건물 등 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18. 3. 2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대 830㎡ 중,
가.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
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1동 80㎡ 및 그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, 하수구, 하수관을 각 철거하고,
나.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에 설치된 경계담장을 철거하고,
다. 위 (ㄴ)부분 토지 80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이재찬

별지